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3.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2건, 개선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운영방식 강화 필요

내규 「□□규정」에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을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사항 위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사회 승인사항 및 보고사항을 내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이사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내부감사 및 일상감사 강화 필요

내규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부에서 내부감사 관련 연간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이사회에 보고된 감사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내부감사 수행실적이 미흡한 수준이며, 현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안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검사대상기간 중 감사부에서 수행한 일상감사가 ○건에 불과하므로

향후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내부감사 및 일상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구매(또는 용역) 계약관리 업무 강화 필요

검사대상기간 중 체결된 전체 계약 ○건 중 ○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수준임에도 구매(또는 용역) 계약체결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이 내규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구매 계약관리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한편, 내규에 근거하여 구매(또는 용역) 계약관리 업무처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보험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

① 내규 「□□관리지침」에 준비금리스크비율 항목에 대해 관리지표로 정하지 않았고, 관리지표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도 지표관리 방법, 담당 부서, 한도초과(예상)시 부서별 대응프로세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관리한도도 설정하지 않은 관리지표 항목이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보험리스크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리지표별 구체적인 관리방법 · 관리한도 및 담당부서를 정하고, 한도 초과(예상) 시 단계별 대응방안 및 이행점검 프로세스 등을 규정화하여 지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위험관리전담부서는 리스크한도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수차례 한도관리 보고를 누락한 바 있으며,

내규 「□□관리지침」에는 보험리스크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 및 시행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년 ○분기 △△손해율이 자체관리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서별 대응방안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아니함

또한, 내규 「□□관리규정」에서 연간 리스크 승인한도를 변경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험관리부서는 ○년 ○분기 한도보고 시 △△손해율이 기 승인된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한도변경승인 없이 한도를 상향하여 △△손해율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년 ○분기 한도보고 시에도 승인된 한도와 상이한 한도 값을 보고하는 등 위험한도에 관한 보고업무 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한도를 변경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종목별 담당부서에서 설정한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리스크관리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보험계약 관리체계 강화 필요

회사는 내규「□□관리규정」에 따라 특정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지침 및 매뉴얼로 규정하여 해당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청약, 계약내용의 변경(배서), 미납계약의 납입최고 및 해지, 실효계약의 복원 및 부활 등 각 계약유지·관리 업무별 세부절차, 유의사항 및 업무별 적정성 점검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6) 계약 인수기준 관리 강화 필요

① 내규 「□□매뉴얼」에서는 계약인수기준의 변경은 중요도에 따라 결재권자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대상여부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결재권자 구분에 관한 규정 없이 담당 부서장 전결로 대부분의 인수기준이 변경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요도별로 결재권자를 구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며, 인수기준의 변경은 회사 보험영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임원 전결사항으로 정하여 중요 인수지침 변경 시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인수기준 변경 시 결재 방식과 관련하여, 전자 및 서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사내 이메일을 통해 변경 요청과 변경 사실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수기준 변경에 대한 결재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않아 담당자 변경 시 결재 이력관리가 곤란하고, 관련 자료가 소실되거나 임의로 수정 될 수 있으며, 합의자와 결재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체계적인 결재관리가 어려우므로 전자결재 등을 통해 결재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내규 「□□규정」에 인수지침 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유관

부서와의 합의(협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 인수기준의 변경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종목별·사안별 협의대상부서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도 없고, 영업부서 요청에 따른 유관부서의 검토결과 및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없이 대부분의 인수기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운영 원칙, 변경 절차, 합의(협의) 절차, 리스크 검토, 각 단계별 책임부서, 예외 운영사항 등 계약인수기준의 제·개정 전반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관부서별 합의(협의) 시 부서별 검토의견을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등 계약 인수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재보험 운영전략 관리 강화 필요

① 내규「□□관리지침」에는 재보험전략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도 재보험운영전략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중에 보고되어 연간 운영전략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보험운영전략을 결정하고, 직전연도말에 차년도 운영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내규「□□관리규정」에 전사위험관리부서가 부문별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사차원의 주요 정책 및 전략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보험운영전략 수립 시 전사위험관리부서의 리스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전사위험관리부서는 재보험운영전략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리스크 검토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운영전략 수립 전 운영전략의 적정성에 관한 유관부서와의 협의체계 없이 재보험부 담당자 단독으로 운영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검사대상기간 중 운영전략에 대한 보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절차가 미흡하므로 리스크 관리부서를 포함한 유관부서 협의체계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고 부서별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연간 재보험운영전략 수립 시 운영전략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운영전략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특히 보유 한도의 경우 내규「□□관리규정」에 출재보험 운용 시 재보험전략에 따라 담보위험 및 보험사고별 보유한도액과 출재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위험 및 보험사고에 대한 고려 없이 포괄적인 ○○재보험 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보험운영전략에는 구체적인 재보험 전략을 포함토록 하고, 내규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재보험 보유한도 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4 재보험 운영전략의 준수 및 실행을 위한 문서화된 점검 및 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관련 업무체계가 미흡하고

출재·수재·보유 전략의 적정성, 임의재보험 초과위험 담보 수준의 적정성 등 운영전략의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재보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재보험사 신용등급 점검결과 등 보고 항목이 불충분하고, 보고도 누락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담당 부서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재보험운영 전략 및 보고업무가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상품개발 체계 보완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

1 회사는 보험 종목별「□□운영지침」에서 상품개발절차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평가, 보험사기영향평가, 일상감시 요청, 판매 후 모니터링 등 중요절차가 동 지침에 누락되어 있고 선임계리사

검증 단계 등 상품 개발단계별 순서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별 최소 소요기간, 세부절차 및 부서별 업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관련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업무 수행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단순상품개발(변경)의 경우 새로운 위험보장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판매채널 변경·담보의 재조립 등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품개발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개발(변경) 필요 여부에 관한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음에도, 내규 「□□운영지침」에서 유관부서와의 서면협의만으로 개발(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자 협의만으로 판매가 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상품의 경우에도 상품개발위원회의 서면협의 등을 거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내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최적기초율의 항목별 산출방법을 하위규정(매뉴얼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정한 별도의 하위규정이 없으므로 매뉴얼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과정의 오류 검증절차도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장기보험은 상품의 개발(변경) 시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개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 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무협의체인 주간 상품개발회의를 통해 협의를 수행하는 체계는 마련하고 있으나, 주간 상품개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부서별 검토 대상 항목, 협의체의 주요 심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상품개발위원회 부의안에 협의결과를 포함하는 등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일반보험의 경우 상품판매 및 변경 여부 결정 시 내규「□□□□ 운영지침」에서 상품개발위원회 심의 이전에 유관부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검토·서명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실무협의체는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이메일을 통한 실무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협의를 수행한 경우에도 의사록을 통해 참석부서별 검토의견이나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전 검토 절차가 미흡하므로 실무협의체 운영 및 부서별 검토 항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검토 내용을 문서화하여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상품판매 중지 여부가 공식 협의체인 상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고 있어, 상품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영업부서 등 특정 부서의 의견에 따라 판매를 중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판매 중지 사유에 대해 상품개발 참여 부서 간 인식을 공유하는 피드백 체계도 작동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품판매 중지에 대한 사항을 상품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관련내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상품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위원별 발언 및 검토내역 등 세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별로 확인·서명을 받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9)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방식 강화 필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9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제5항, 제4-3조의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제2항 및 별표6에 의하면 미보고발생손해액의 보험금 추정액은 보험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선택한 통계적 방식에 대하여는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사는 ○년 ○월 ○○시스템*을 도입하여 손해사정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년 ○월~○년 ○월 기간중 장기보험 입원(통원)담보의 보험금

지급기간이 시스템 도입 이전 보다 평균적으로 ○일이 단축되었으며

* 통합전산시스템으로 보험급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청구건 자동배당, 자동심사, 이미징 시스템, 실시간 보험금 지급 등이 도입

상기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을 ○년 ○월말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손해보험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에 따른 통계분석을 인보험 담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장기보험 입원(통원) 담보만 보험금 지급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통계적으로 추론됨

따라서, 회사는 ○년 ○월말 장기보험 입원(통원)담보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정 시 ○년 ○월 이후 보험금 지급기간이 단축된 사실(추이의 단절)을 반영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험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해석·평가 등을 통해 미보고발생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지표인 금리리스크 비율,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비율 이외에 별도로 금리리스크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관리하지 않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년 ○월말 금리리스크가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만기불일치위험액이 증가하도록 자산을 운용하여 금리리스크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리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금리리스크에 대한 통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유동성 위기 관리대책 마련 필요

내규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부는 투자운용부와 협의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동성을 고려한 자금배분기준, 시나리오별 유동성 예측 및 보고체계, 유동성 조기경보제도, 위기상황 시 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동성 위기상황 시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취약하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위기상황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 시 자금조달계획 및 위기 상황 시 부서별 업무분장 등을 명시한 유동성 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보완 필요

직무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영업부서(Front Office)는 성과평가(이하 'KPI') 지표는 있으나 평가비율 등 산출방식이 불분명하고 본부 이하 부서별 등에 대한 세부 KPI평가 지표가 없으며, 지원부서(Back Office)는 KPI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KPI지표 및 산출방식을 전사적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기준 및 절차 등 성과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회사가 마련한 5개년 경영계획에는 보험종목별 손익구조, 보종별 매출 포트폴리오, 손해율 관리, 적정자산배분을 통한 투자수익관리 등 세부 목표별 전략과 이행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재무계획, 투자전략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경영계획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명시적으로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경영계획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규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리스크 관리체제 미흡

1 내규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회사는 리스크 통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리스크 종류별로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리스크 종류별 허용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지급여력비율,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리스크, 손해율 및 유동성비율 관련 등급구간별 기준비율만을 설정(매년)·모니터링(분기)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취약수준인 경우에도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등 리스크관리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므로

리스크별 주요 위험요인, 경영환경의 변화 및 계획 등을 반영한 리스크별 허용한도를 매년 적시에 설정하여 충실히 관리하는 한편, 허용한도 근접 시 대응방안 수립 등 전사차원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리체제를 재구축하고 동 내용이 관련 내규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음에도 내규 「□□관리규정」 등에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등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사 리스크 관리를 통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내규를 개정하는 한편, 전사차원의 리스크 관리체제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자본)위원회 의사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작성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정의결 시 수정근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일부 보고안건의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발언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 바, 위원별 질의 및 발언내용 등 중요사항이 의사록에 상세히 기재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비재무리스크(운영·전략·법률·평판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내규 「□□관리규정」에 리스크별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측정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운영리스크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 및 보고절차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비재무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한편, 각 리스크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운영하고 이사회 등에 보고하는 등 비재무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전사위험관리부가 직원 ○명(CRO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IFRS17 및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시행 등으로 리스크 전담조직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인력 확충 등 리스크관리 부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 관련 내규체계 미흡

내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에도

회사는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내규체계가 미흡한 바,

내부통제 관련 내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내규에 근거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세부 시행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체계 불합리

① 내규 「□□ 운영매뉴얼」 등에 따르면, 회사는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 분기까지 회의록 등을 통해 구체적 안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협의회를 사실상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 분기부터 운영된 협의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사항, 민원분석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상품개발·영업 등 관련 부서와 환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매월 ○회 개최함에도 실무협의회 운영근거가 관련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등을 통해 실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운영근거 및 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동 실무협의회 안건 및 논의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관리 하는 등 실무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운영지원본부장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겸임하여 소비자보호 업무 외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유인도 있는 상황이므로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내부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회사는 내부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임직원 단말기에 ○○보안시스템, ○○방지시스템, ○○검출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은 ○○부서에 대해서는 ○○를 강제화하고 있지 않으며, ○○권한을 전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있어 내부정보 유출 사전통제가 미흡하고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외부 발송 시 자동 차단하고는 있으나,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자동 차단되지 아니하여 책임자 승인 없이도 ○○정보 포함 데이터가 무단 발송될 우려가 있으며

직원 간 업무자료 공유를 위해 구축된 ○○서버 내 저장된 파일에 대해 불필요 공유 파일의 주기적인 삭제 등 ○○서버 운영·관리업무가 미흡하므로

○○암호화 대상 확대, 암호화 해제 시 책임자 승인절차 마련, 외부 이메일 발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버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내부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ALM업무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ALM전략을 수립하지 않는 등 ALM업무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부채 관리를 위한 ALM 업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보험 판매 시 자산·부채의 특성을 분석하지 않는 등 ALM관련 업무가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ALM전략 수립 및 ALM과 관련된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ALM업무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상품 개발단계에서 ALM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보험부채 관리를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